

기획 우리고을 포천의 문화유적 ⑮ - 서성선생 묘

백성들이 유리하고 굶주리는 것을 막고 미리 대비 남지기로회 조직 역학 토론 서화에도 출중



최 중 규 포천명유회 회장

- 지정번호: 경기도기념물 제53호
- 지정년월일: 1976.8.27
- 시대: 1631년(인조9)
- 소재지: 포천시 설운동 산 1-14
- 규모: 높이 1.5m, 둘레 14m(모역 25m×56m)
- 재료: 토반 및 석물
- 배향인물: 서성선생

아주 낮은 도로변 아산에 위치하고 있는 서성선생 묘는 곡담 양머리에 장방형의 화강석을 세워 장식한 후, 봉분을 중심으로 사각석으로 둘러싸고 봉분의 호석은 높고 둥글게 한 후 봉토하였다. 묘 전방에 묘비와 혼유석, 상석이 밀집하여 있다. 상석의 전면을 경계로 좌우곡담의 머리를 연결하고 상석 후면에 묘비가 있으며 좌우에 망주석과 문인석이 갖추어져 있다. 곡담과 호석, 봉분 앞의 묘비는 1968년 후손들이 신축 또는 보수한 것이다.

▶서성 1588(명종 13)~1631(인조9)



경기도 기념물 제 53호로 지정된 서성 선생묘

선생은 조선시대 문인으로 자는 현기, 호는 약봉, 본관은 달성이다. 사헌부 장령 관소의 증손이며 예조참의 고의 손이고, 해의 지이다. 아버지 서해가 22세의 젊은 나이로 죽고 어머니 고성이씨마저 맹인으로 숙부인 서업에게 양육을 받으며 자랐으나 얼마 후 숙부마저 세상을 떠났다. 1586년(선조 19) 28세에 별시 문과 을과로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다. 처음에는 권지성균관학유가 되었다. 그후 사관에 뽑혀 검열, 대교, 봉교가 되었다가 성균관 전적으로 옮기고 사헌부 감으로 모든 어려운 일을 걸사리 처리하니 동료들이 탄복하였다. 1592년(선조 25) 왜적이 서울을 필박하니 선조의 서행에 호소사 황정욱이 청하여 종사하였는데,

함경도에 이르러 정옥 등이 두 왕자(임해군·순화군)와 더불어 함께 적에게 포로가 되었다. 이때 서성이 홀로 계교를 써서 탈출하여 행재소에 이르러 군사를 일으키고 평사 정문부를 원조하여 연달아 적을 부수고 승첩을 거두었다. 경기감사를 배수받고 임기가 차서 돌아와 지중추가 되었다. 1631년(인조9) 4월18일에 병졸하였다. 호는 약봉인데 서울 약사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동명을 따서 약봉이라고 했다. 그는 학문을 즐겨서 이인기 이호민 이귀 등과 남지기로회를 조직하여 역학을 토론하였으며 서화에도 출중하였다. 뒤에 영의정에 추증되신으로 여러 도를 관찰하였다가 다음에 개성유수로 배수했다. 돌아와서 지중추가 되고 다시 참찬

이 되었다. 이때에 감형의 육사가 있었는데 서성에게 책임을 물려 탈직되었다가 서품하여 지중추가 되었다.

1613년(광해군 5)에 계속육사가 일어나자 서성에게 원한을 품고 있던 간담들이 모함하여 의금부에 체포되어 단양으로 귀양갔다. 다시 영해로 옮기었고 또 원주로 옮기었다. 유배생활을 11년 하면서도 용태를 바꾸지 아니하고 문을 닫고 주역을 읽었다.

1623년(광해군 15) 인조반정 후에 풀려나 형조판서로 제수되었다. 다음에 대사헌을 제수받고 경연과 성균관사를 겸하였다. 1624년(인조2) 이괄의 난이 일어나자 호종한 공로로 관중주로 특진하고 다시 형조판서로 옮기고 다시 관중주로 돌아왔다.

1627년(인조 5) 정묘호란이 일어나 임금이 강화로 행할 때 종묘를 받들고 수행하였다. 1628년(인조 6)에 반역목사를 다스리시어 승복대부를 더 받았고 다시 지중추가 되었다.

1631년(인조9) 4월18일에 병졸하였다. 호는 약봉인데 서울 약사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동명을 따서 약봉이라고 했다. 그는 학문을 즐겨서 이인기 이호민 이귀 등과 남지기로회를 조직하여 역학을 토론하였으며 서화에도 출중하였다. 뒤에 영의정에 추증되신으로 여러 도를 관찰하였다가 다음에 개성유수로 배수했다. 돌아와서 지중추가 되고 다시 참찬



윤 경 자 주부명예기자·가산면 금헌리

설레임 때문일까? 새벽 5시30분에 눈이 떠져서 살펴서 커튼을 걷고 창문을 열어보니 아직도 어두컴컴... 하지만 더 이상 잠이 오질 않아 나만의 간단한 도시락을 준비했다. 가산지부 정기모임, 죽엽산 산행은 내게는 14년만의 나들이였다. 오전 9시30분 경북중학교에서 다함께 모여서 출발하기로 했다.

간단한 회의와 최두열 전무님과 김영복 편집국장님, 임경순 단장님의 격려의 말씀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출발했다. 10시23분에 산행을 시작했다. 12시30분이면 하산 예정이었다. 산행을 시작하니 30분경 산중턱

아닌가! 보성녹차병에 포장한 나의 모습은 진짜 내상이었다. 나무 숲속에서 잔잔한 호수와 드높은 가을하늘. 우리는 풍경화 속에 주인공이 되어 소주잔잔에 "가산지부 주부명예기자단을 위하여"를 외쳤다. 세상 부러울 것

가을 산행

에 호수가 있었다. 우리는 이 좋은 경치에서 기념 촬영과 함께 각자 가지고 온 도시락을 꺼내 놓았다. 혹시나 소주 잔잔이 생각날까 싶어 소주병을 가방에 넣으려니 좀 술술갈아 보였다. 그래서 빈 보성녹차 패티병을 이용해 살짝 포장해 가방에 넣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 단장님이 준비해 주신 소주, 맥주병을 가방에 양껏 챙겨온 것이

이 없었다. 정상을 올라야 했기에 다시 짐을 꾸려 산행을 계속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 길을 잘못찾아 새로운 개척길을 만들어 엉금엉금 기어 올라갔다. 다리가 후들후들 숨은 헬레릭 딱 2시간 가량의 산책로 산행이 라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정상에 도착하니 오후 2시30분, 늦은 점심을 하고 사람의 길장담그기 행사에 대한 토론을 했

다. 모두가 성실껏 참여하는 의견일치를 보고 하산 길에 올랐다. 거의 질벽수준의 석은나무가지 숲을 가까스로 내려왔다. 오후 4시30분경, 6시간 가량의 산행이었다. 하지만 힘든만큼 보람도 있었고 모두들 만족스러워 했다. 그리고 다음에도 산행모임을 계속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힘든 산행을 했으니 또다른 산행에도 자신감이 생겼다. 안전에 대한 토론도 하고 건강과 다이어트도 챙기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는 것이 참 마음에 들었다.

오랜만에 나들이 간다며 소시지도 챙겨주고 4살짜리 아들까지 말아준 우리 신랑이 정말 고맙고 포천신문 가산지부 주부명예기자단 회원분들과 산행을 같이 하게 된 것에 대해 즐겁고 잊을 수 없는 하루였다.

귀하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을...

차별화된 식품을 선도하는 기업 "영동식품"



대표 李文吉

"20년간 오로지 믿을 수 있는 좋은 제품만을 제조·판매하여 소비자에게 보답하겠다는 신념은 변함없습니다"



생산품목

- 영동국수·소면
- 영동메밀·칼국수
- 곰표국수·소면
- 곰표칼국수
- 정훈우동·스파게티
- 차별화된 솔잎·췌·췌국수

■본사 :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359-2 ■전화 : 031-535-5773 ■팩스 : 031-534-13

특별기획 경찰수사권 독립에 관한 연구 ⑩

사법경찰관리의 권한과 검사제도



노 영 민 포천경찰서

다만 수사를 함에 있어 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는 반면 사법경찰관은 수사의 보조자로서 독자적인 수사권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일선 수사기관에서 수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실제 수사인력의 대부분은 검사 이하의 사법경찰관으로서 이들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지휘를 받아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진술조사나 피의자신문조사를 작성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사법경찰관도 참고인이나 피의자를 조사하고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권한으로서의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서 범죄인지의 권한을 들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죄를 인지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한 때에는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사건에 관하여 수사의 권한이 있음은 물론이다.

둘째로는 수사실행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즉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신문 및 참고인 조사, 감정·통역·번역의 위탁, 공무소기타 공사단체에 대한 조화와 같은 임의수사는 물론 피의자 체포·구속, 압수·수색·검증과 같은 강제수사도 할 수 있다. 또한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인을 체포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지백강요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한다는 이유에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그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사법경찰관의 수사권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즉 검사의 수사지휘·감독권에 의한 제약이 가해질 뿐만 아니라 검사와 달리 영장청구권,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청구권, 수사종결권이 없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구속하고자 할 때 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

한 주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에도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도 검사에게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그밖에도 증거보전신청,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체포·구속영장 또는 피의사건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권한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감정유치장, 증인에 대한 구인장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영장의 집행은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다.

사법경찰관리는 각 소속 관서의 관할구역 내에서 직무를 행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관할구역 내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이외에서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이 관할구역 이외에서 수사를 하거나 관할구역 이외의 사법경찰관리의 촉탁을 받아 수사할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고는 사전보고를 원칙으로 하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보고가 허용된다.

다만 사법경찰관리가 위 규정을 위반하여 관할구역 이외에서 수사를 한 경우에도 그 수사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검사(Staatsanwalt)란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범죄의 수사로부터 재판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 걸쳐 광범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재판집행의 지휘와 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의 지휘와 감독,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그 직무와 권한으로 삼는 국가기관이다. 검사의 검찰권은 행정권에 속한다.

따라서 검사는 법무부에 소속된 행정기관으로 국가의 행정목적 위해 활동하지 않을 수 없

다. 그러나 범죄수사와 공소제기·유지 및 재판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권행사는 형사사법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끼침으로써 사법권의 행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법권독립의 정신은 검사에게도 요구되지 않을 수 없고, 검사에게는 법원에 준하는 임명자격과 신분이 보장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검사는 행정기관임과 동시에 오로지 진실과 정의에 따라야 할 의무를 지닌 준사법기관(Justizbehörde) 내지 법조기관(Organ der Rechtspflege)이라고 할 수 있다.

검사는 검사의 직무로 정해진 검찰사무를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의 보조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 검사의 이름으로 의사를 결정하여 사건을 처리한다. 이 점에서 합의를 구성한 다수법정이 연명으로 공적 의사표시인 재판을 하는 것과는 다르다.

따라서 검찰권의 행사에는 단독제가 채택되어 있고 합의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검사는 단독제의 관청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 이러한 검사의 지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검찰청법 제4조에 의하면 검사는 형사사건에 관해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제기, 법령의 정당한 적용청구, 재판집행, 국가를 당사자·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및 지휘·감독 등의 직무와 권한을 가진다고 하고, 형사소송법 제198조의 2에 의하면 검사는 체포·구속장소감찰과 같은 인권옹호직무가 부여되어 있다.

<다음호에 계속>